

인천상공회의소 종합건강검진 업무협약서

인천상공회의소(이하 “수행기관”이라 한다), 나은병원(이하 “병원”이라 한다)은 상호 협의하여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수행기관” 과 “병원”이 상호 협력하여 “수행기관”에서 지원하는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용대상자의 범위) 이 협약에 따라 “수행기관”의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한다.

제3조(세부협력사항) “수행기관” 과 “병원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“수행기관”과 “병원”은 이용대상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협력체계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.
2. “수행기관”에서는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“병원”에 다음과 같이 적극 협력한다.
 - 가. 대상자 신청·접수 및 선정, 대상자 명단 관리
3. 검진 비용은 이용대상자 1인당 40만원으로, 이용대상자 본인이 검진 당일 “병원”에 직접 지불한다. (추가 비용 발생 시 동일)
4. “수행기관”은 이용대상자에 검진 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.

제4조(이용방법) 이용대상자가 “병원”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기관 관련부서로 예약 또는 방문하여 이용하여야 한다.



제5조(신분확인) 이용대상자는 “병원”을 이용할 경우, 이용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신분증, 면허증 등)를 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의 준수) 이 협약의 쌍방 당사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7조(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)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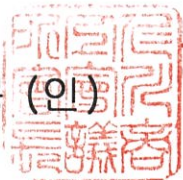
② “수행기관”과 “병원”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별로 아래에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4월 7일

인천상공회의소

회장 박주봉 (인)



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

대표자 지희숙 (인)

